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07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윤준병 · 전종덕 · 곽상언
김 윤 · 임오경 · 강준현
전용기 · 문대림 · 임호선
박 정 · 서영석 · 김교홍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행 중인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 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도 농약·분진 등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이 균등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8%로 전체 평균치인 5.8%에 비하여 높으며,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세 미만의 가임기 여성은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에서 제한고 있는 만큼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에 연령 제한을 두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비용의”를 “비용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비용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전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생략) <신설>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여성농어업인 연령 특성 및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전체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비용과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된 질환의 예방 및 치료비용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